

채권 양도(환매) 예정 통지

씨에스씨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("양도예정인")는 2025.12.29. 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아래 주식회사 다올저축은행("양수예정인")으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26.06.29. 자로 아래 양수예정인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* 채권매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예정인에게 이전·제공 할 예정이며,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위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,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 통지서 [별지]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.

양도예정인		
매입사	주소	대표자 이사
씨에스씨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	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60, 502호 (도봉동, 한발법조타워)	이장욱

양수예정인		
매각사	주소	대표
주식회사 다올저축은행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(대치동, 해성1빌딩)	김정수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▪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연락처 (☎ 02-3277-928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▪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<별첨1. 양도예정채권 명세>

* 양도예정채권 명세

(자산확정일 기준 금액)

No.	양수예정인	계약번호	채무자명	생년	성별	양도예정일	원금	기타비용	이자금	합계금	장래이자면제여부	자산확정일
1	주식회사 다올저축은행	1801672	김현복	1992	남	2026-06-29	29,613,790	-	2,124,220	31,738,010	Y	2025-11-10